

「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 2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10월 1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전건설과장 김찬수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 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합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(안 제6조제2항)
 -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회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의회 회원수를 20명 내외로 규정
- 교육(안 제13조제4항)
 - 방재활동 등 참여 시 민방위 교육면제에 대한 규정이나,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 따라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회원수를 20명 내외로 명확히 정하고,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협의회는 단장,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, 읍·면 대표,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